#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2017. 4. 20.

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

### 1. 제안경위

가. 제 안 자: 성동구청장

나. 제출일자: 2017. 4. 10.

다. 회부일자: 2017. 4. 11.(의안번호: 1094)

#### 2. 제안이유

2015. 11. 21.시행된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- 나.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기본계획 수립(안 제4조~제5조)
- 다.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(안 제6조)
- 라. 평생교육센터 설치 · 운영 및 업무와 역할 (안 제7조~제8조)
- 마. 평생교육센터 위탁 및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(안 제9조~제10조)
- 바.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사항(안 제11조~제15조)

# 4. 참고사항

## 가. 관계법령

-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, 제26조
- 「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7조 ~ 제9조
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붙임
- 다. 기 타
  - 1) 입법예고: 2017. 3. 2. ~ 2017. 3. 22.
  - 2) 규제심사 결과: 행정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
  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: 특기할 사항 없음
  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: 특기할 사항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2015. 11. 21. 시행된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성동구에 거주하는 발달 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사회참여 촉진,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15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
- 안 제1조 ~ 제2조에서는
-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,
- 안 제3조 ~ 제4조에서는
- 구청장의 책무와 관계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음.
- 안 제5조 ~ 제6조에서는
- 기본계획 수립·시행과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,
- 안 제7조 ~ 제8조에서는
- 평생교육센터의 설치·운영과 업무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9조 ~ 제10조에서는
-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의 위탁과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,
- 안 제11조 ~ 제14조에서는
- 관련기관과 협력체계의 구축, 교육·홍보, 지도감독,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음.

- 본 제정조례안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등의 지속적인 지원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, 관련 법 제정에 맞추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,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.
- 다만, 조례안 제6조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, 재정 부담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